평 가 항 목		평 가 기 준
위치	일반 사항	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은 곳에 위치할 것
		도서관, 공원 등 학습환경을 고려한 위치를 선정할 것
	학생 통학 범위	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통학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일 것
		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정도일 것
	학생 수용 계획	초·중등학교의 경우 당해 교육청의 수용계획에 부합될 것
		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단위 생활권의 중심에 배치할 것
		초·중등학교용지의 2면 이상이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것
	도로 접근성 등	통학로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연계되도록 하고, 반드시 충분한 넓이의 인도를 확보할 것
크기 및 외형	적정 면적	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는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제6조에 따른 교지(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합한 용지)의 기준면적 이상일 것
		특수학교는 「특수학교 시설·설비 기준령」 제2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
		대학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
		기술대학은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8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
	길이와 폭의 비	교사의 배치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일 것
지형 및 토양 환경	경사도 등	대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할 것
		교사의 설치 등 공사시공이 용이한 지역일 것
	풍수해 등 우려	과거 풍수해 등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일 것
	토지의 과거 이용력	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, 정유공장, 석면취급공장 및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
		폐기물처리장, 폐기물 매립장 및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
		기타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닐 것
	토양환경 등	바위암괴 또는 암괴의 노출이 되지 아니할 것
		단층들이나 단층흔적과 근접하지 아니할 것
		안전한 표면하부 혹은 충분한 토양의 인장력을 유지할 것
		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4조의2 규정에 따른 '토양오염우려기준'에 이하일 것
		지표수는 「환경정책 기본법」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(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)
대기 환경	대기,소음,진동	「환경정책 기본법」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'환경기준'에 적합할 것
		「소음·진동법」제21조의 규정에 의한 '생활진동규제기준'에 적합할 것
	일조량	학교의 교사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
		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
주변 환경	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	「학교보건법」제6조제1항 제1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내지 제9호, 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
		「학교보건법」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못한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
	인근 300미터 이내 의 위험요소 등 조사	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'비산먼지 발생사업장'의 현황
		「유해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, 화학공장, 정유공장, 연료저장 시설, 핵발전소, 광산, 제련소 및 석면취급 공장 등의 현황
		「악취방지법」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현황
		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, 공항, 철도 및 교통유발시설(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센터, 백화점, 업무시설, 관람시설 등)의 현황
		기타 유사 위험시설 (변전소, 주유소 등) 현황
공공시설 등	공공시설등	상수도, 전기, 도시가스 및 하수시설 등의 이용가능성
		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관련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를 것

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

Regulational Development Institute

Regulational Development Institute

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사전에 보호한다

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



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사전에 보호한다

7

교육과학기술부

(우110-76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-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TEL 02-2100-6540 www.mest.go.kr



(우137-791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길 220-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TEL. 02-3460-0628, 0218 www.kedi.re.kr





교육환경 평가란?

교육환경 평가의 필요성

-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집중화와 대형 건물의 난립,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각종 유해요소가 급증하고, 유흥·향락 업소 범람으로 인하여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
-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상업성용지가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자투리땅에 학교를 짓는 일이 발생하면서, 신설학교의 교육환경 또한 위협 받고 있음
- 이에, 학교용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 또는 교통량이 많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, 주변에 위해업소 또는 공해 배출업소가 밀집한 곳 등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
- 교육환경 평가는 학교설립 예정지를 사전에 평가하여 선정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

교육환경 평가의 목적

•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·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함

[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]

'07. 4. 「학교보건법」의 개정('08. 4.28.시행)으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되어,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,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·도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

교육환경 평가의 기능 및 역할

- 학교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물리적·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
- 학교 설립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
- 예측 가능한 택지개발(도시개발) 및 학교용지 확정을 위한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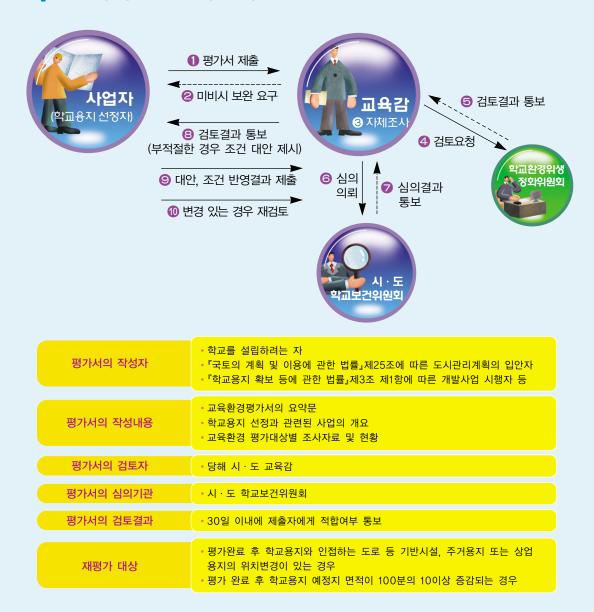
교육환경보호의 중요성

교육환경 평가 알아보기

대표적인 교육환경 침해 문제 등은 적합한 학교위치 선정, 주변 위해요소 제거 등에 기반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통해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. 러브호텔 건축



▮교육환경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



┃외국의 교육환경 보호 제도

- 해외에서는 각 국의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개별 법률에 의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며,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같이 독립적인 제도는 없음
- 우리나라의 교육환경평가제도는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분리·규정되어 왔던 교육환경 보호항목들이 종합 정리된 독창적인 제도로서 교육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미글

-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함
- 안전(Safety) · 입지(Location) 등 12개 항목과 기준으로 구성된 용지선정(Site Selection Screening) 과정을 통해 학교용지를 선정 · 평가함 [켈리포니아 교육부]

투일

- 학교의 위치결정은 지역지구 개발, 도시계발계획과 밀접한 조율을 거쳐서 결정함
- 신도시가 개발되면 학교부지가 먼저 선정되고, 그 주변에는 어떠한 유해시설도 설치할 수 없음

일본

-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통일적 ·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국가의 법률 없음
- 형법, 학교보건법,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률에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음



03 06